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제출자 : 평창군수

군유 행정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안

의 안 번 호	19

제안연월일 : 2022. 9.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유통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무상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치 : 대관령면 횡계리 335번지(대관령로 81)

나. 면 적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19.1㎡(1층 251㎡, 2층 268.1㎡)

다. 수탁기관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라. 위탁기간 : 2022. 9. ~ 2027. 9.(5년)

마. 사용목적 : 평창군 로컬푸드 판매장

바. 대상재산내역

재산의 표시					비고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구조	면적(㎡)	
대관령면 횡계리	335	건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51	로컬푸드 판매장 (2층 중 1층)

사. 사용계획

대상재산내역	면적(㎡)	사용계획	비고
농특산품 판매장	251	로컬푸드 판매장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용료 감면 (무상사용)

□ 행복장터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

< 현장사진 >

사업 계획서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료 감면안

○ 유통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해 (재)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용료 감면(전액 면제) 허가를 통해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여 평창군 농특산품의 우수성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35번지(대관령로 81)

○ 사 용 자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 사용내용 : 평창군 농특산품 판매장

○ 사용면적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519.1㎡(1층 251㎡, 2층 268.1㎡)

□ 추진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무상사용) 의회 동의 : 2022. 9.

○ 사용허가 계약체결[군↔(재)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 2022. 9.

□ 검토사항(필요성)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2000. 1. 6. 개설되어 위탁운영 중이던 시설로서, 최근 연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매 출 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1월 ~ 7월)	2021	2020
연도별 매출액	74	159	270

○ 유사한 사례로 영동고속도로 평창(상)휴게소에 위치한 평창군 행복장터 판매장의 체계적인 운영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해 11월 위탁운영자를 (재)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로 변경 및 사용료 감면(전액 면제)하였으며, 기존 가공품 위주의 판매장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전환 후 같은 기간 매출액이 약 130% 증가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평창군 행복장터(고속도로 휴게소 내 판매장) 매출액

구분	1월 ~ 7월	8월 ~ 12월	합계
2021년	154백만원	102백만원	256백만원
2022년 [(재)푸드통합지원센터]	357백만원	-	588백만원(추정)

○ 이에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감면(전액 면제)하고자 함.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3. 생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2.4.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